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	
2020년 5월 4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 4.(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
배포일시	2020. 5. 1.(금)	담당부서	입지총괄과
담당과장	조웅환 과장(044-203-4430)	담 당 자	김시덕 사무관(044-203-4409)

서비스업도 산업단지 입주 허용

-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·의결 -

【시행령 개정 개요】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**되었다고 밝힘

□ **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,**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

○ **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**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,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

【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】

1 **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 허용**(안 제6조제5항 단서)

○ 현재 제조업,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**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·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**

2 **융·복합,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** 필요한 경우 **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**(안 제6조제5항제13호)

○ **원칙허용·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**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·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**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**할 수 있도록 규정

3 **금전으로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방안 규정**(안 제43조의2)

○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

*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,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하여 취득·관리

【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】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**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, 시제품 제작·판매업(메이커스페이스),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(판매, 수리, 교육), 드론 관련 서비스업(체험, 교육, 조립, 항공촬영) 등의 입주가 가능**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

□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**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,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(공포후 3개월)에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**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시덕 사무관(☎ 044-203-44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